

일반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구분(제22조의3제2항 관련)

일반회계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1. 국립국제교육원	1. 국립생물자원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 국립통일교육원	2. 화학물질안전원(「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3. 국방홍보원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4. 국방전산정보원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8. 국립중앙극장	
9. 국립현대미술관	
10. 한국정책방송원	
11. 한국농수산대학교	
12. 국립중자원	
13.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4. 국토지리정보원	
15. 항공교통본부	
16. 국립수산과학원	
17. 해양수산인재개발원	
18. 국립해양측위정보원	
19. 국세상담센터	
20. 관세인재개발원	
21. 통계개발원	
22. 삭제 <2021. 12. 28.>	
23. 삭제 <2021. 12. 28.>	
24. 삭제 <2021. 12. 28.>	
25. 삭제 <2021. 12. 28.>	
26. 삭제 <2021. 12. 28.>	
27. 국립소방연구원	
28. 국립문화재연구원	
2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30. 궁능유적본부	
3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32. 국립축산과학원	
33. 국립산림과학원	
34. 국립수목원	
35. 항공기상청	

36. 국립기상과학원

37. 해양경찰청